

노 후 자 동 차 교 체 환 급 (공 제) 신 청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 소재지)			
⑤제조(판매)장 소재지		⑥사업자등록번호	
⑦거래 은행	은행	지점	⑧계좌번호

신청 내용

⑨품명	⑩수량	⑪단가	⑫차대번호	기납부 세액		노후차 교체 감면후 세액	
			⑬수입신고번호	⑭개별소비세	⑮교육세	⑯개별소비세	⑰교육세
⑱환급·공제 여부		⑲개별소비세 환급(공제)액(⑭-⑯)		⑳교육세 환급(공제)액(⑮-⑰)		㉑합계액 (⑲+⑳)	

㉒환급(공제)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환급(공제) 물품의 반출자	㉓성명(대표자)		㉗성명(대표자)
	㉔상호(법인명)		㉘상호(법인명)
	㉕주소(본점소재지)		㉙주소(본점소재지)
	㉖반출장소		㉚반입장소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급(공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판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2.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3.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⑱ 환급·공제 여부"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환급", 공제신청 시는 "공제"라고 적습니다.
-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 신청기한: 신차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다.)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공제)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업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의 인감날인을 받고,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